

현대퓨처넷 안전보건관리정책

목 차

I

2023년 Review

II

산업재해현황 및 개선대책

III

2024년 산업안전보건 환경 분석

IV

2024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

별첨 I. 현대퓨처넷 안전보건 경영방침

II.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

III.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

IV. 안전보건 성과평가

V.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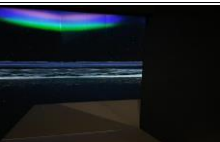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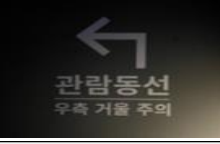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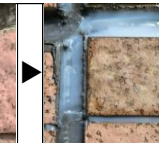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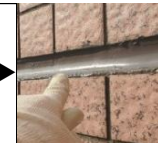
『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(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)』

☞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I. 2023년 Review

○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 결과 : 양호 [별첨 4 참고]
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중심의 '23년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 실시
- '23년 그룹사 안전보건 교차 점검을 통한 안전보건체계 강화 및 작동성 보완

구분	주요 활동	이해관계자		
		구성원	협력사	고객
안전보건 관리강화	① '23년 안전보건경영계획 수립 (현장 작동성 강화) - 점검 : 주 / 분기 / 연 단위 점검, 그룹 교차 점검 - 컨설팅 : 정기 안전보고서, 임직원 건강상담 - 협의체 : 관리감독자 안전보건회의, 산업안전보건위원회 (분기) 협력업체 안전보건협의체 (월) - 교육/훈련 : 소방서 연계 CPR 교육 및 소방 대피 훈련, 정기 산업안전 보건교육 이수 - 평가 : 관리감독자,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평가	●	●	●
	②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 및 완화조치 시행 - 현대퓨처넷빌딩 위험성 평가 (4월) → 위해요인 34건 개선조치 - 아르떼뮤지엄 여수 안전점검 (4월, 12월) → 위해요인 16건 개선조치	●	●	●
	전 			
	후 			
	계단 난간대 보강 (MOON, GARDEN) 동선 안내 강화			
	③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(2월)	●	●	
	④ 현대퓨처넷빌딩 전기안전관리자 위탁 선임 (2월)	●	●	
	⑤ 사옥 외벽 타일 안전점검 및 보수 (6~10월)	●	●	●
 타일 마감재 보강 타일 탈락 보강				
⑥ 비상상황 대응매뉴얼 제작 및 사내망, 협업툴 공지 (9월)	●	●	●	

● 개선 필요사항

- 비상상황별 대응 매뉴얼 숙달 및 체화 필요 ⇒ 사업장별 상황 대응 모의 훈련 강화
- 사옥 외벽 타일 안전점검 및 보수 일정 조정 ⇒ 장마 기간 전 외벽 보수 작업을 통한 효과성 제고

I. 2023년 Review

○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 정립

· 사업장별 위험성평가 실시 후 개선조치 이행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

구 분	내 용			비 고
서초사옥	· 사옥 내 개선필요 항목(34건) 개선조치 이행 (4월)			· 총 133개 항목 중 34건 식별 (4월) · 조치 확인 (5월) · '22년 57건 比 23건 감소
	분 류 원 인 항 목		유해 위험에 따른 개선 대책 · 전선 정리, 분전함 내 충전부 방호조치 등 · 안전표지(세절기, 천공기 사용주의 외) 부착 등 · 전자레인지, 소화기 등 관리 · 유해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관리 · 옥상 난간대 및 E/L실 사다리 보강, 천정 보수 · 운반용 대차 바퀴 안전조치 / 릴코드 교체 관리	
	감전 7			
	작업환경 14			
	화재/폭발 4			
	화학적 요인 1			
	전도/추락 5			
	작업도구 3			
	· 소방서 연계 직원 심폐소생술(CPR) 교육 및 자체 대피훈련 (10월)			
	· 사옥 입주사 직원 40여명 교육 이수 / 당사 근로자 화재 대피 훈련 실시			
아르떼뮤지엄 여수	· 전시장 내 주요 위해요인(16건) 개선조치 이행 (4, 12월)			· 총 60개 항목 중 16건 식별 (4월) · 조치 확인 (9월)
	분 류 원 인 항 목		유해 위험에 따른 개선 대책 · 벽체 균열 보수, 물품보관함 수리 등 · 화재감지기 추가 설치, 소화기 관리 등 · 전시장 카페트 탈착부 보강, 계단 난간 설치 · 비상구 표시등 방향 조정 등 · 통로유도등 방향 조정, 피난대피도 식별 강화	
	구조물 5			
	감전/화재 1			
	전도/추락 8			
	재난관리 1			
	위기대응 1			

○ 시설물 보완 및 근무환경 지원 : 95,209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내 용	시 기	비 용
시설물 개선/보완	· 10층 화장실 전기 온수기 설치	1월	463
	· 사무실 조경 관리 (식재 변경 및 수형 관리 등)	2, 6월	800
	· 사무실 윈드바이저 구매 및 설치	3월	617
	· 지하 3층 기계실 업무환경 개선 공사	3월	4,658
	· 사옥 화장실 전층 절수탭 설치	4월	350
	· 위험성 평가 개선필요사항 조치 이행 (집수정 준설 등)	5월	3,786
	· 사옥 외벽타일 안전진단 및 외벽타일, 코킹 보수 공사	7월, 9월	29,700
안전강화	· 사옥 전기안전관리자 위탁 선임 ('23년 2월 ~ 지속)	2월	50,820
	· 화재 대피용품 구매	2월	1,850
	· 1층 로비 호신용품 구매 (3단봉, 페퍼스프레이 등)	9월	1,810
근무환경 지원	· 미화원 청소 안내 입간판 구매	8월	355

II. 산업재해 현황 및 개선 계획

□ 당사 산업재해 현황 : 0건

○ 최근 3개년 산재 현황

구 분	2023년	2022년	2021년
인원(명)	57	56	46
산재사고(건수)	0	0	0
발생률(%)	0%	0%	0%
비 고	※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		

○ 향후 계획

구 분	내 용
전시관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	· 전시관 운영 간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- AI 활용 방문객 분석 및 사고 감지 솔루션 도입 (기술검증 진행 中) ※ 고객 혼잡도 알림, 이동 동선을 활용한 비상 대피 동선 효율화 등 - 개관 전, 후 위험성 평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· 모의 상황 훈련 및 안전보건교육 강화 - 상황별 매뉴얼 수립을 통한 업무 투입 전 교육 및 훈련 실시 - 일단위 응급처치 및 안전 교육 실시 (교육용 AED, 심폐소생술 모형 활용)
시설물 점검/보수	· 당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한 정기 위험성 평가 시행 - 점검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개선 조치를 통해 안전성 확보
대내외 홍보	· 당사 무사고 현황 홈페이지 등 홍보 → 사고 발생 Zero 유지
안전 제안제도 활성화	· 전직원 참여 위험성 개선 제안 활성화 (사내 협업툴 활용) - 제보 활성화를 통한 사고확산 가능성 저하
정기 교육 강화	· 정기 안전보건교육 체계적 시행 예정 (온라인 교육)

Ⅲ. 2024년 산업안전보건 환경 분석

□ 대외 요인

○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단계적 확대 ('24년 1월 부 50인 미만 확대 적용)

- 중대재해처벌법은 '21. 1. 26. 제정되어 '22. 1. 27. 50인(억) 이상 기업 대상 우선 시행하였으며, 50인(억)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'24. 1. 27. 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함

- 이에 따라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·이행이 요구됨

※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설정, 안전보건 인력 및 예산 배정, 유해·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, 안전 보건관리체계 점검 및 평가

□ 대내 요인

○ 경영환경 측면

-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위험성 평가 의무화로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강조됨
-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(억) 미만 기업으로 확대되어 원사업자의 협력사·도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, 안전보건 조치의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, 원사업자 또한 책임을 지게됨
- 협력사·도급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위험성 평가 지원 등 안전보건 이행 지원

○ 고용환경 측면

- 사업장 확대에 의한 안전보건 관리 범위 증가 및 신규 도급업무 위탁에 따라 안전·보건대행을 통한 전문적인 안전보건 컨설팅 및 위험성평가 지속 시행
- 직원 의견 청취를 통한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속 운영
(※ 당사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없으나 운영 중)

○ 근무환경 측면

- 사옥 내·외 (배관 노후, 외벽 타일 등) 시설 노후 심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설 점검 및 개선 필요
- 실감콘텐츠 전시관 특성 (低조도, 장애물 多) 을 고려한 잠재적 사고 예방 관리 강화

○ 직원건강 측면

- 건강검진 수검 병원 확대, EAP 업체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직원에 대한 정신적·신체적 건강 관리 강화
- 월 1회 건강상담 시행 시 상담 내용 및 콘텐츠 강화를 통한 직원 건강관리 유도

○ 공사관리 측면

- 영종도 르 스페이스 전시관 신규 개관에 따라 고소 작업 및 시설 공사 간 안전보건 규정 준수 강화
- 50인(억)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라 공사 계약 업체 안전보건관리 공문 발송 및 작업 전 TBM(Tool Box Meeting), 작업 허가서 등 의무 작성

IV. 2024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

운영방향

○ 안전보건 현장 작동성 제고

- 안전보건 경영목표 '중대재해 Zero化' 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정착 및 안전보건 활동 점검 강화를 위한 '현장 작동성' 실질적 향상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· 안전보건 업무수행 평가 | ·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참여 |
| · 안전보건 전문 컨설팅 수검 | ·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강화 |
| ·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| · 안전보건 교육 강화 |
| ·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 시행 | · 디지털 기술 연계 안전보건 강화 |

-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한 가이드라인과 체계적인 제도 운영으로 산업현장 안전 확보

○ 지속가능한 안전보건 경영환경 구축

- KCGS ESG 평가 통합 A등급 유지 ('23년 환경 A, 사회 A⁺, 지배구조 A)
- B2C 사업장 위험성 평가 강화 (반기 1회 → 분기 1회)
-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능력 확보

○ 신규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(영종도 르 스페이스)

- 영종도 르 스페이스 전시관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
- 상황별 비상 대응 매뉴얼 교육 및 모의 훈련을 통한 사고 대응 능력 제고
- 디지털 기술 기반 안전보건 솔루션 도입을 통한 주요 이해관계자(고객)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

IV. 2024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

○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[별첨 1 참고]

- 안전보건 경영을 실천하여 모든 서비스와 제품, 활동에 이르기까지 구성원과 종사자 및 고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 실시
- ESG 경영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협의체 회의시, 안전보건 정책 및 계획을 보고하고 활동 성과 및 주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실시

○ 안전보건 전담인력 및 조직구성 [별첨 2 참고]

구 분	관련법	선임대상
관리감독자	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	각 팀장
안전관리자	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	안전관리대행 (경신산업안전)
보건관리자	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	보건관리대행 (한국보건환경연구원)

※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미대상

○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[별첨 3 참고]

- 예산편성
 -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안을 분석하여 안전관련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검토하여, 최고경영자 승인 획득
 - 예산집행
 - 예산 집행 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, 용도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 및 피드백 실시
- ※ 관련법 :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5항

○ 안전보건 목표관리 [별첨 4 참고]

-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를 통한 관리 체계 개선 진행
 - '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'를 안전보건 활동의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

구 분		세부 내용	비 고
기본평가	안전보건경영체계	경영 체계 및 계획 수립 여부, 최고경영진의 리더십 등	
	안전보건관리	위험성 평가 및 근로자 보호, 비상상황 대비 등	
	안전보건활동	위험요인별 방지 조치, 사고 예방 활동 등	
심화평가	안전보건기여	안전보건 관련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등	
	안전보건저해	중대재해발생 및 언론 리스크 등	

※ 평가 및 피드백 → 전 직원 공유 (부정 평가 발생 시에는 재발방지 대책까지 공유)

Ⅳ. 2024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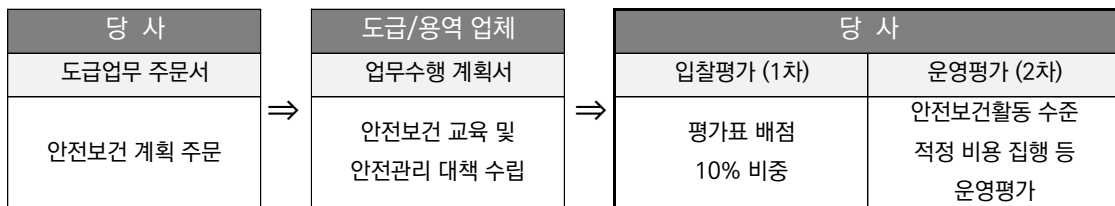
○ 근로자 의견청취 및 참여

구 분	세부 내용	주 기
산업안전보건위원회	·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· 의결	분기 1회
안전보건협의체	· 도급사 · 협력사 작업장의 위험요인 점검결과 공유 등	월 1회
직원 참여 채널 (협업툴 활용)	· 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 지침을 제안 / 공유	-
경영진 회의 (월간 회의)	· 당사 안전보건 활동, 종사자 의견 공유 등	월 1회

- 당사는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으로 '산업안전보건위원회' 설치 의무는 없으나, 적극적인 근로자 의견 청취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, 협력사와 '안전보건협의체'를 별도 구성하여 점검 및 개선 조치 시행
- 전 직원이 절차와 형식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'안전·보건·환경 제안채널' 운영 (협업툴 Teams 內)
- 월 1회 경영진 회의(월간회의)시 당사의 주요 안전보건 활동성과 및 종사자 의견 등을 공유하여 의사결정 및 정책 판단에 활용함

○ 협력업체 안전보건 확보

· 도급/용역 업체 선정



-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 전, 후 2단계에 걸쳐 안전보건 수준 평가 (입찰평가 + 운영평가)
- 운영평가 기준에 2번 연속 미달한 업체는 즉시 계약 해지를 검토 함

· 공사업체 선정

구 분	세부 내용
협력사 검증	· 산업재해를 확인서 검토 ※ 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
입찰시	·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수립 ※ 대규모 공사의 경우 1명 배치
계약시	· 안전 및 품질관리 서약서 제출, 안전 관리 강화 요청 공문 발송
착공시	· TBM 실시 및 안전교육 의무 실시 ※ 당사 관리자 확인
공사중	· 현장 감리 강화 ※ 사진 증빙자료 준공서류에 포함
완료시	· 준공 서류 제출 (안전관리자 현장 배치 / 시공 사진 등)

- 공사업체 선정 기준 및 단계별 검증 과정을 보강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을 최소화
- 필요시 당사 안전보건관리자 공사 현장 배치 예정

IV. 2024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

○ 안전보건 교육 강화

· 법정교육 실시

- 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 교육 실시 ※ 인재개발원 스마트캠퍼스 교육과정 추가

구 분		대 상	교육시간
정기 교육	사무직	회계, 지원, 기획 직무	분기 6H
	비사무직	영업 직무	분기 12H
채용 교육	일용직	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	1H
		1주일 초과 ~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	4H
	일용직外	정규직, 계약직	8H
관리감독자 교육		각 팀장	연 16H
관리책임자 교육		-	연 6H

○ 사옥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실시

· 전문업체 안전점검 의뢰 (연 1회) 실시

- 연 1회, 전문업체 안전점검 의뢰하여 건축물의 물리적·기능적 이상유무 조사 시행

· 법정 점검 시행

- 각종 시설물 정기, 정밀 안전점검 시행 및 개선 조치 시행 (소방, 승강기, 전기시설 外)

○ KCGS ESG 평가 통합 A등급 유지

· ESG 등급 현황

구 분	종합등급	구 분		
		환 경	사 회	지배구조
2023년	A	A	A ⁺	A
2022년	A	A	A	A
2021년	미평가	미평가 (HCN 분할 매각으로 인해 평가 미시행)		

○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

구 분	점검 항목	주 기
위험성 평가	· 사무실 환경 위험, 기계 및 설비 등 (사옥)	연 1회
	· 시설물, 상황별 비상 대응 능력, 대피 계획 등 (전시관)	분기 1회 (확대)
합동 점검	· 관계 수급과 합동으로 작업장 순회 점검	분기 1회
순회 점검	· 관계 수급인 작업장 순회 점검	주 1회

-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는 상기 업무 수행 여부를 분기 1회 점검하고,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

IV. 2024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

○ 신규 전시관 안전보건 체계 구축 (영종도 르 스페이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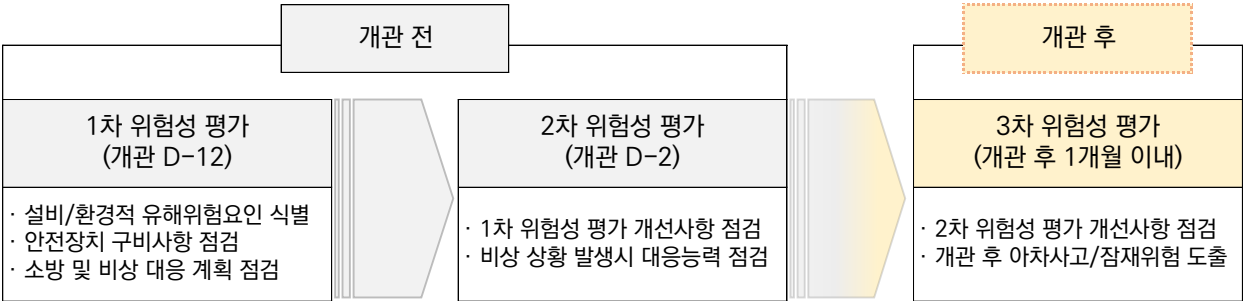
· 신규 전시관 안전보건 체계 구축

- 중대재해 및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 Flow

대응활동	내 용	연락체계
상황 전파 / 현장 대응	· 관리자 보고 및 현장 대응 (고객 대피 안내 및 구호조치) · 소방서, 유관기관 신고 및 보고	상황발생 최초목격자
즉각적인 작업 · 운영중지	·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작업 · 운영 중지 조치 · 근로자 및 고객 대피, 위험요인 제거	최초접수 르 스페이스 관장
사고현장 보존	· 사고현장 접근 금지 및 출입금지 표시 (가림막, 입간판) · 사고현장 사진, 동영상 촬영 및 CCTV 확보 · 상황 대응 외 일체 업무 중단	내부 매뉴얼에 따른 현장대응 주관부서 (전시사업팀)
비상대책본부 구성	· 사고발생 직후부터 종료시까지 운영 · 비상대책본부 사고 원인 조사	1단계 (내부연락) 지원팀장
사고원인 조사	· 사고 발생원인 및 피해발생 문제점 파악 · 필요시 전문업체 등에 의뢰하여 전문 진단 실시	2단계 (그룹/외부 연락) 그룹 기획조정본부
재발방지 대책 수립	· 재해 발생원인 및 대응시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 · 개선방안 수립 및 재발방지 대책안 도출 · 단계적 보완 실시 및 유사사고 예방	연론대응 (홍보실 외)

· 위험성 평가 실시

- 개관 전 · 후 위험성 평가 실시를 통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



· 디지털 기술 기반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

- 폐쇄회로TV (CCTV) 영상 활용한 방문객 이동 및 활동 데이터 분석

대응 활동	기대효과
실시간 밀집도 분석 및 알림	· 고객 혼잡에 따른 과밀화 방지, 효율적인 인파 흐름 유도 (안전사고 예방)
비정상 행동 감지	·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
데이터 축적을 통한 안전 관리 강화	· 잠재 위험 지역 식별을 통한 관리 강화 및 예방 조치 (위험 발생 선제적 대응) · 효율적인 고객 비상 대피 동선 관리 강화

※ 폐쇄회로TV (CCTV) 영상을 활용한 AI 관리 시스템 업계 최초 도입

별첨 I. 현대퓨처넷 안전보건 경영방침

□ 안전보건 경영목표

☞ 전 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

☞ 중대재해 ZERO

□ 안전보건 경영방침

- 1) 안전보건 관련 유해 요인을 제거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재해를 억제한다
- 2)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
- 3) 모든 직원이 안전·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구현한다
- 4) 안전보건체계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해 상황별 대응 System을 구축한다

【기업문화 전략 실천가치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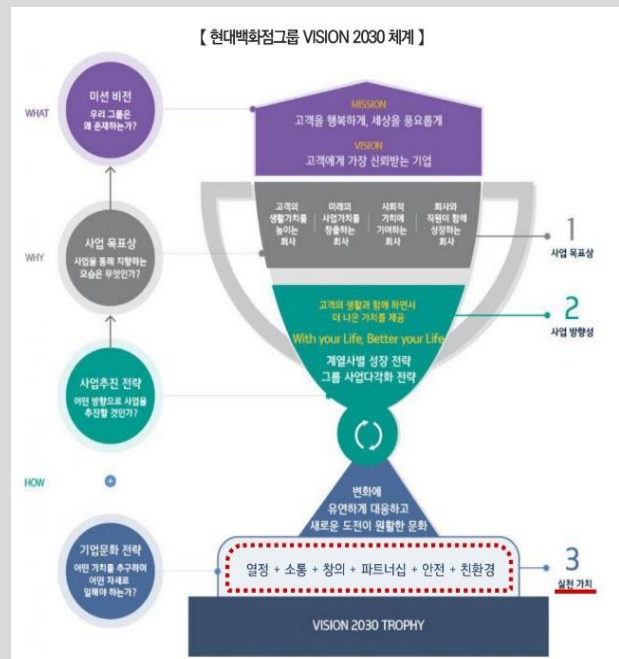
기업문화 전략 6대 실천가치		
열 정	소 통	안 전
창 의	파트너십	친환경

· 안전(Safety)

- 책임의식을 기반으로 전 구성원의 안전의식 고취
- 능동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추진
- 안전한 근무환경 구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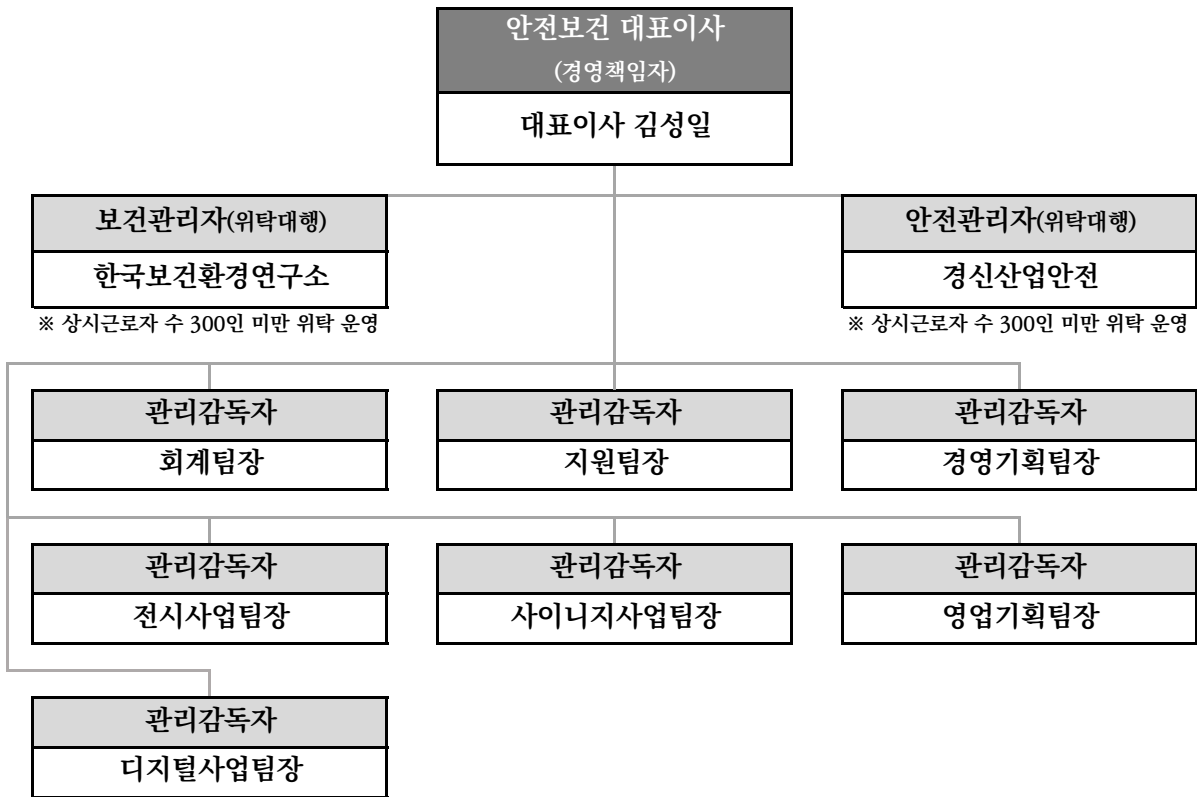
· 친환경(Environment)

- 사업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친환경 경영가치 구현
- 고객과 사업적 파트너가 공감하는 친환경 가치 추구
- 친환경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실천 유도



별첨 II.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

□ 조직 구성



□ 주요 업무 (책임과 권한)

안전보건 대표이사	· 사업의 안전·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(사업 총괄) · 안전보건 경영목표·경영방침 수립,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설정 · 관련법(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)에서 정하는 책임과 의무 이행 ·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· 산업재해·중대재해 예방활동, 안전문화 정착 등 ·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조사 및 관계기관 보고 ·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, 근로자의 유해·위험 방지 조치 ·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
안전관리자/ 보건관리자 (관리대행기관 위탁)	· 순회점검·지도 및 조치 · 위험성 평가 지도·조언 · 관련법 및 당사지침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
관리감독자 (각 팀장)	· 현장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·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 ·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

별첨 III.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

□ 예산 현황

[단위 : 원]

구 분	금 액	비 고
계	480,182,000	
안전·보건 투자비	295,000,000	· 실감콘텐츠 전시관 안전 솔루션 도입
시설물 유지 보수	143,084,000	· 노후 시설 교체, 유지보수 등
안전·보건 인건비	6,300,000	· 안전·보건대행 선임 비용
교육비	1,863,000	· 정기교육 + 관리감독자 교육 (외부 교육) 외
근무환경 개선	6,500,000	· 근무환경 및 위험성평가 개선을 위한 비용
기 타	27,435,000	· 안전협의체 운영비 및 근로자 검진 비용 등

○ 시설물 유지보수·개선 : 143,084천원

- 노후 시설물 개선(옥상 방수 공사, 외벽 타일 점검 등) 등 시설물 유지보수 개선 비용
- ※ '23년 실적 기준 편성 (필요시 예산 초과 사용 가능)

○ 안전·보건 인건비 : 6,300천원

- 안전/보건관리 컨설팅 및 업무위탁 계약 비용 (6,300천원)
- ※ 사옥 시설관리 도급사 안전·보건관리 컨설팅 지원 비용 포함

○ 교육비 : 1,863천원

-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분기 2,250원/人 × 4회 × 50명 = 450천원
- 관리감독자 교육 59천원/人 × 7명 = 413천원
- 기타 안전보건 캠페인 / 매뉴얼 제작 / 안전보건 표지 부착 등 1,000천원

○ 근무환경 개선 : 6,500천원

- 사무실 환경 개선 및 위험성 평가 개선 조치를 위한 예비 비용 편성

○ 기타 : 27,435천원

- 근로자 정기신체검사 비용 (23,235천원)
- 안전협의체 운영비 (2,400천원)
-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(EAP) (1,800천원)

별첨 Ⅲ.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

□ 시설 현황

○ 사업장 현황

구 분	건물 층수	연면적	준공년도	비 고
서초사옥	B3F ~ 9F	6,877㎡	1987.06	
아르떼뮤지엄 여수 (여수엑스포단지)	-	5,861㎡	-	※ 임차 사용중
르 스페이스 (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 트)	-	6,143㎡	-	※ 임차 사용중

○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시설물 보유 현황 (서초사옥)

구 분			수 량	관계 법령 (설치 및 점검·관리 관련)
대분류	중분류	소분류		
기 계	공조설비	급배기 환	1	
	보일러	관류형 (0.5Ton)	1	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39조, 동법 시행규칙 제 31조의 6~9, 별표
	냉동기	흡수식냉동수기 (240RT)	1	기계설비법 제16조 및 제 17조
	저수설비	시수조/정수조/ 고가수조(2)	4	수도법 제 33조 제 2항, 동법 시행령 제 50조, 시행규칙 제 22조의 3
	승강기	엘리베이터	2	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2조, 동법 시행규칙 제 54조
		차량용 엘리베이터	2	
전 기	발전기	비상발전기 (1,500kw)	1	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,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4
	수전설비	TR (Trancefomer:변압기)	2	
		VCB (진공차단기)	3	
		ACB (공기차단기)	6	
방 재	소방(기계)	소화전	12	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,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1항, 별표1
	소방(전기)	수신반 (P형)	1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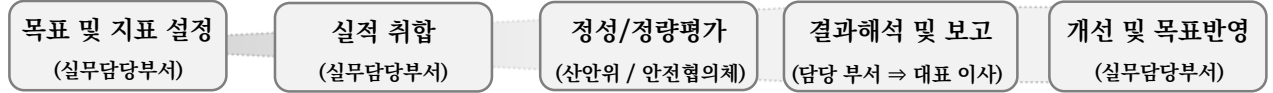
※ 아르떼뮤지엄 여수, 르 스페이스의 경우 임차 운영중으로 당사 보유 관리시설물 없음

별첨 IV. '23년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

○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 개요

-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를 통해 전년도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강화하고자함

※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 Flow



구분	평가지표	배점	세부 평가내용	
	합계	100		
안전보건 경영체계	소계	40	세부 배점	
	안전보건경영 리더십	15	최고경영자 안전경영 실천의지	5
			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개	5
			최고경영자 안전보건활동 참여	5
	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역량	10	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	4
			안전관리조직 역량 및 구성원 전문성 향상	3
			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협의체 운영	3
	안전보건경영투자	5	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	5
안전보건 관리	안전관리 규정 및 지침 수립	5	안전관리 규정 내용 및 구성 / 최신화 여부	5
	안전경영계획 수립	5	안전경영계획 목표 및 전략 수립	5
	소계	35	세부 배점	
	근로자 건강 유지·증진·보호	5	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 예방관리	2
			건강증진활동	3
	위험성평가	10	위험성평가 지침·계획	3
			위험성평가 추진 활동	4
			위험요소 완화 조치/효과성 평가	3
안전보건 활동	안전보건 교육 참여도	5	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/ 실시 / 관리	5
	비상상황 대비·대응도	9	비상시 대비·대응 관련 매뉴얼	3
			비상시 대비·대응 교육 및 훈련	3
			비상시 대비·대응 관련 시설·장비 관리	3
	도급사 안전보건관리	6	안전보건활동 이행 수준	3
			정기 점검활동 이행 여부	3
	소계	25	세부 배점	
	안전보건 관리	6	적정 근무환경 조성, 대피경로 관리	4
안전보건			안전·보건표지(위험물질, 중량물 등) 부착	2
	기계·전기 설비, 구조물 위험방지 조치	6	기계·전기 설비, 구조물 위험방지조치	3
			기계·전기 설비, 구조물 법정 검사 및 점검	3
	화재 및 질식 등 위험방지 조치	5	화재·폭발·누출 예방 조치	5
	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	8	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	5
			유해위험작업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	3

○ 안전보건활동 심화평가지표(가감점 항목표)

구분	평가지표	배점	세부 평가내용	
안전보건 기여	역량강화	20	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취득	5
			안전보건 관련 교육 수료(법정의무교육 외)	5
			소방서 등 외부기관 안전보건 우수 표창 수상	10
안전보건 저해	우수사례	15	안전보건 관련 개선 우수 제안	8
			안전보건 관련 신기술 적용 장비·서비스 도입	7
	중대재해발생	-40	중대산업재해·중대시민재해 발생	-20
안전보건			사고 보고 및 초동조치 미흡	-10
			사고 후속조치 미흡	-10
	언론 리스크	-40	안전관리 분야 사고 발생에 따른 언론 노출	-10
			서비스 민원에 의한 언론 노출	-10
			인권경영 관련 신고에 의한 언론 노출	-10
안전보건			정보보안 분야 사고 발생에 따른 언론 노출	-10

별첨 IV. '23년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

○ 평가자 :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

※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 결과 : 양호

(100 ~ 80 : 양호 / 79 ~ 50 : 보통 / 49 이하 : 미흡)

구분	평가지표	배점	세부 평가내용		'23년 실적	
	합계	100			합계	93.2
	소계	40	세부 배점		소계	38.0
안전보건 경영체계	안전보건경영 리더십	15	· 최고경영자 안전경영 실천의지 5 · 최고경영자 안전보건활동 참여 5 ·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개 5		· 안전·보건 확보 의무 이행 관한 최종 의사결정 ·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(※ 설치 의무 없음) ·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홈페이지 공개	13.7
	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역량	10	·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 4 · 안전관리조직 역량 및 구성원 전문성 향상 3 ·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협의체 운영 3		· 안전·보건 관리자별 책임/권한 부여 ·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, 전기안전관리자 위탁 선임, 안전보건대행 추가 선임 · (분기) 산업안전보건위원회, (월) 안전보건협의체 운영	3.9 3.0 3.1
	안전보건경영투자	5	·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5		· '23년 예산 229백만 편성 및 집행	4.9
	안전관리 규정 및 지침 수립	5	· 안전관리 규정 내용 및 구성 / 최신화 여부 5		· '23년 안전관리 규정 최신화 완료	4.7
	안전경영계획 수립	5	· 안전경영계획 목표 및 전략 수립 5		· '23년 퓨처넷 안전보건경영계획 수립	4.8
	소계	35	세부 배점		소계	32.6
	근로자 건강 유지·증진·보호	5	·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 예방관리 2 ·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3		· 정기 임직원 건강상담 / 건강검진 지원 · 근로계약 유해요인 조사 시행 · 아침 스트레칭 방송 운영, 동호회 활동 지원	2.0 2.6
안전보건 관리	위험성평가	10	· 위험성평가 지침·계획 3 ·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 4 · 위험요소 완화 조치/효과성 평가 3		· '23년 위험성평가 지침 / 계획 수립 · 사업장별 위험성평가 시행 (연 1회 → 2회) · 위험요소 완화 (50건 개선) 및 효과성 평가 시행	2.8 3.9 2.7
	안전보건 교육 참여도	5	·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/ 실시 / 관리 5		· 안전보건관리계획 내 법정교육계획 반영 (전원 수료 완료)	5.0
	비상상황 대비·대응도	9	· 비상시 대비·대응 관련 매뉴얼 3 · 비상시 대비·대응 교육 및 훈련 3 · 비상시 대비·대응 관련 시설·장비 관리 3		· 비상대응매뉴얼 수립 및 각 사업장별 공유 · 소방서 합동 심폐소생술 집합 교육 및 자체 대피 훈련 진행 · 월 정기점검 및 법정 점검 시행 (소방설비 및 AED 등)	2.7 2.7 2.8
	도급사 안전보건관리	6	· 안전보건활동 이행 수준 3 · 정기 점검활동 이행 여부 3		· 도급업무 내 안전보건 활동 계획 및 실행 · 사업장별 정기 점검 시행 (주, 분기, 연 단위)	2.8 2.8
	소계	25	세부 배점		소계	22.7
	안전보건 관리	6	· 적정 근무환경 조성, 대피경로 관리 4 · 안전·보건표지(위험물질, 중량물 등) 부착 2		· 아르떼뮤지엄 여수 피난설비 현장점검 및 개선 실시 · 사옥 외벽 안전점검 및 타일 / 코킹 보수 실시 · 안전·보건표지 미부착 대상물 식별 및 추가 부착	3.9 1.9
	기계·전기 설비, 구조물 위험방지 조치	6	· 기계·전기 설비, 구조물 위험방지조치 3 · 기계·전기 설비, 구조물 법정 검사 및 점검 3		· 기계·전기 설비 작업 안전 장비 구비 및 안전보건 표지 부착 · 승강기, 가스, 소방, 전기 설비 법정 정기 검사 수검	2.7 2.9
	화재 및 질식 등 위험방지 조치	5	· 화재·질식 등 위험방지 조치 5		· 화재대피용품 구입 및 사옥 내 비치 · 밀폐공간작업 전 작업계획서 작성 및 파일철 관리	4.6
안전보건 활동	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	8	·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5 · 유해위험작업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 3		· 고위험 작업 시행 전 사전 신고 및 관리 감독 시행 · 유해위험작업 전 작업계획서 작성 및 파일철 보관	4.1 2.7

별첨 V.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

순번	산업안전보건법	주요내용	벌칙
1	제14조 (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)	○ 정지근로자 500명 이상을 자용하는 회사 및 공자준위 정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및 승인 (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, 시설,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)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2	제16조 (관리감독자)	○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(기계·기구 및 설비의 안전·보건 점검, 작업복·보호구·방호장치의 착용·점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)	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
3	제17조 (안전관리자) 제18조 (보건관리자) 제19조 (안전보건담당자)	○ 안전·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 수행 ※ 당사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으로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중	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
4	제24조 (산업안전보건위원회)	○ 사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 ※ 당사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으로 설치 미해당되나, 적극적인 근로자 의견 청취를 위해 운영 중	500만원 이하 과태료
5	제25조 (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)	○ 사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 ※ 당사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으로 규정 작성 미해당되나, 규정 수립하여 운영 중	500만원 이하 과태료
6	제29조 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	○ 정기안전보건교육 : 사무직, 비사무직 판매업무 (6H / 반기), 비사무직 판매업무 외 (12H / 반기) ※ '24년 개정 ○ 채용 시 교육 : 일용직 (기초안전보건교육 4H), 건설업 외 (8H), 일용근로자 (1H 이상) ○ 특별교육 : 일용직 (2H 이상), 건설업 외 (16H 이상), 밀폐공간 작업 등 39개 작업 ○ 관리감독자 교육 : 소 업종,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 (연간 16H 이상)	500만원 이하 과태료 3,000만원 이하 과태료 (특별교육)
7	제32조 (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 교육)	○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관련 기관에서 안전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직무에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	500만원 이하 과태료
8	제34조 (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)	○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	500만원 이하 과태료
9	제36조 (위험성 평가의 실시)	○ 해당 작업상의 근로자 참여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해야 함 ○ 위험성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·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함 1)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·위험요인 2) 위험성 결정의 내용 3)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	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 등 직무미이행 시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
10	제37조 (안전표지의 설치, 부착 등)	○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, 비상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함	500만원 이하 과태료 (1개소당 10/30/50만원)
11	제38조 (안전조치)	○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- 기계·기구, 기타 설비, 폭발성·발화성·인화성물질 및 전기·열·기타 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- 운송·조작·운반·해체·중량물 취급 및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 - 추락·붕괴·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등의 장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	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
순번	산업안전보건법	주요내용	벌칙
12	제39조 (보건상의 조치)	○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- 원재료 · 가스 · 증기 · 분진 · 미스트 · 산소결핍 · 고온 · 저온 · 소음 · 진동 · 초음파 등에 의한 건강장해 - 사업장 배출 기체 · 액체 또는 찌꺼기, 단순 반복 작업 등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-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, 환기 · 채광 · 조명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	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13	제54조 (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)	○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매공 작업 중지 및 전파,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관할 지역 노동관서 기관장에게 보고	3,000만원 이하 과태료
14	제57조 (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)	○ 산업재해 발생 보고 ※ 재발방지계획서 등 3년 보관 - 사망시 :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 (고용노동부 관할지청) -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시 : 관할지청에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	은폐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미/거짓 보고 : 1,500만원 이하 과태료
15	제63조 (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)	○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, 모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(보호구 착용 등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 지시 제외)	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16	제84조 (안전인증) 제87조 (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)	○ 유해 · 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- 리프트 · 고소작업대 · 기계톱 · 곤돌라 · 크레인 등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 · 기구로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(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하여야 함)	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
18	제93조 (안전검사)	○ 유해 · 위험 기계, 기구,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안전검사 실시 - 리프트 · 고소작업대 · 컨베이어 등은 2년마다 안전검사 를 받아야 함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19	제114조 (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, 비치 등) 제115조 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용기 등의 경고표시)	○ 화학물질 등 사용 · 저장 · 제조시 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 를 게시 ○ 화학물질의 용기 · 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	미게시 : 500만원 이하 과태료 (1개소 당) 경고표시 : 300만원 이하 과태료
20	제118조 (유해 · 위험 물질의 제조 등 허가)	○ 유해 화학물질 제조, 사용 시 노동부관할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- a-나프틸아민 및 그 염, 디아니시딘 및 그 염, 베릴륨, 벤조트리클로라이드,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- 염화비닐, 콜타르피치, 크롬광가공, 크롬산아연, o-나톨리딘, 황화니켈류 등	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
21	제119조 (석면조사)	○ 건축물 · 설비의 철거 · 해체 시석면 조사 실시 후 그 결과의 기록 · 보존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, 5,000만원 이하 과태료
22	제122조 (석면 해체, 제거)	○ 석면 해체 · 제거 작업 기준 준수 ○ 건축물 · 설비에 함유량과 면적 이상 석면 함유 시석면 해체 · 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 · 제거 실시	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
23	제125조 (작업환경측정)	○ 시행규칙 별표 21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- 유기화합물 등 화학적 유해인자, 소음(80dB 이상) 및 고열의 물리적 유해인자 , 분진의 유해인자 - 측정 주기 : 대상 작업장 반기 1회 (최근 1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변화가 없을 경우, 연 1회 실시)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24	제129조 (일반건강진단) 제130조 (특수건강진단 등)	○ 일반건강진단 주기 : 사무직) 2년 1회 비사무직) 1년 1회 ※ 당사 소속직원 1년 1회 진단 시행 중 ○ 특수건강진단 대상 : 시행규칙 별표22의 노출 근로자 (소음과 진동 등 물리적 인자, 야간 작업 등) 특수건강진단 주기 : 6개월 ~ 2년 1회 ○ 배치 전 건강진단 : 신규채용, 작업 전환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25	제164조 (서류의 보존)	○ 산업재해 발생기록, 관리책임자 · 안전관리자 · 보건관리자 · 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, 석면 조사 서류, ○ 작업환경측정 · 건강진단 서류 등 (3 ~ 30년간 보관)	300만원 이하 과태료